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대한축구협회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2005. 3. 16. 제정
2014. 8. 28. 개정
2020. 12. 7. 개정
2022. 01.26. 개정
2022. 09.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과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및 대회 정의)

- ① 등록팀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는 협회 승인 대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②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명시된 회원단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등록팀)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에 적용한다.
 2. 등록팀이 참가하는 각종 대회에 적용한다.
 3. 비회원 단체가 등록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에 적용한다.
 4. 협회가 승인하는 국내개최 대회의 승인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단, 해외 팀이 참가하는 국내 개최 국제대회 및 국제경기는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③ 본 규정에 적용되는 대회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대회」라 함은 대한체육회 및 협회가 승인한 16개 이상의 등록 팀이 참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를 말한다. 단, 여자부 대회 및 동호인 대회의 참가팀 수 기준은 해당 대회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2. 「지역대회」라 함은 전국대회를 제외한 각 시도협회 관할 범위 내에서 지역 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대회를 말한다.
 3. 「연맹대회」라 함은 전국대회를 제외한 각 전국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4. 「초등부 페스티벌 대회」라 함은 협회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협회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하며, 세부적인 승인 기준과 운영 방식은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
 5. 「연습경기」라 함은 수익사업의 목적이 없고, 각종 시상을 하지 않는 단순한 훈련을 위한 경기를 말하며, 어떠한 대회명칭(대회, 페스티벌 등)도 사용할 수 없다.
 6. 전국대회를 제외한 모든 승인대회는 「전국대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대회 참가 범위

제3조 (대회 참가 범위)

- ① 협회 모든 등록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은 대회는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단, 전문 및 동호인 U12팀의 4학년(U10)이하 선수는 예외로 한다.

- ② 협회 등록팀은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하지 않은 대회 참가로 인해 팀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대회 참가 제한
 - 1. 전국대회
 - 가. 남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대회 참가제한은 아래와 같다.
 - a. 초등부 전국대회 및 페스티벌 대회는 동계방학 및 하계방학 기간 동안 협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12일 이내로 참가가 가능하다.
 - b. 중등부의 경우는 「연 2회(동계1회, 하계1회)」로 참가를 제한한다.
 - c. 고등부의 경우 「연 3회(동계1회, 하계1회, 협회가 지정한 학기 중 1회)」로 하되, 협회와 정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연 2회로 제한할 수 있다.
 - d. 단, 초중고 축구리그(왕중왕전 및 꿈자람페스티벌 포함)는 참가제한 횟수에서 제외한다.
 - 나. 여자부의 경우 「연 3회」로 참가를 제한 한다.
 - 다. 아래의 경기대회는 참가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a.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AFC 주최대회 및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는 국제대회)
 - b.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 c. 여자부의 경우 방학 중에 참가 하는 대회
 - d. 전국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거나 협회 정책에 따라 승인된 초중고 저학년대회의 경우 참가 횟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 2. 지역대회
 - 가. 지역 내 팀이 참가하는 시도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지역대회는 참가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나. 비회원단체(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와 시도협회가 공동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지역대회의 경우 등록팀은 「연 2회」로 참가 제한 한다.
 - 3. 연습경기
 - 연습경기는 참가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⑤ 동호인 축구팀 및 동호인 선수는 ④항의 대회 참가 제한을 적용 받지 않는다.

제3장 대회 개최 신청 및 승인

제4조 (신청 자격)

- ① 대회 개최 신청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비회원 단체의 경우, 제6조 제4항을 준수하고, 개최지역 시도협회에 1차 승인을 받은 후 협회에 대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 신청은 반드시 주최 단체만 신청 가능하나, 주최 단체가 주관 단체에 신청 자격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주관 단체에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대회 주최, 주관 및 후원의 정의)

대회 신청의 주체는 주최, 주관, 후원으로 구분되며 그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최」라 함은 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2. 「주관」이라 함은 주최 기관(단체)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3. 「후원」이라 함은 대회에 필요한 재정, 시설, 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을 말한다.

제6조 (대회 개최의 범위)

- ① 협회는 대한체육회 승인대회와 연간 국내대회 사업계획을 통해 승인된 대회 및 협회 정책 사업에 따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시도협회
 1. 전국대회(저학년 대회 포함)를 개최할 수 있다.
 2. 지역 내 팀이 참가하는 지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비회원단체(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역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등록규정에서 정의하는 준회원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전국연맹
 1. 전국대회(저학년 대회 포함)를 개최할 수 있다.
 2. 저학년 대회의 경우, 축구발전차원에서 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개최할 수 있다.
- ④ 비회원 단체(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단체)가 등록 팀을 대상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하거나 전국단위 초등부 페스티벌 대회 및 중고등부 저학년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 정관에 명시된 해당 「시도협회」 또는 「시도협회 산하 시군구 협회」를 공동주최 또는 주관 단체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지역대회는 전국대회 개최 기간(2월, 7월, 8월 및 학기 중 지정 기간)에는 개최할 수 없다. 단, 동호인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는 제외한다.

제7조 (신청 기한)

- ① 전국대회의 신청
 1. 기존 전국대회 개최는 연간 국내대회 사업계획을 통해 확정된 대회에 한한다.
 2. 기존 전국대회(저학년 대회 포함) 개최는 매년 대회개막 3개월 전까지 협회에 「대회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회가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는 이에 따른다.
 3. 신규로 신설하고자 하는 전국대회 신청의 경우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다.
- ② 지역대회의 신청
 1. 지역대회 개최는 매년 대회개최 전년도 12월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대회개최 1개월 전까지 협회에 「대회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1'호에 의거하여 12월까지 협회에 보고되지 않을 경우, 대회위원회 특별승인을 받은 대회에 한해서만 대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3. 지역대회가 각급 협회 사업(대회 및 리그)일정과 중복 시에는 대회일정을 반드시 조정하여 신청하거나 재승인 후 개최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 ③ 전국단위 초등부 페스티벌 대회 및 저학년대회의 신청은 전국대회 기준을 준용한다.
- ④ 단, 동호인 대회의 경우 별도의 신청 기한을 두지 않는다.

제8조 (승인 신청 구비서류)

- ① 대회 개최 승인 신청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최단체 승인 신청 공문
 2. 승인 신청서

3. 운영 계획서

4. 개최지 관할 광역 시도협회 개최 동의서(또는 승인 공문)

5. 대회 규정

- ② 동호인 대회는 협회가 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joinkfa.com)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①항의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동호인 대회는 ①항 제3호와 제5호를 혼합하여 대회참가요강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대회의 승인)

- ① 협회는 승인 요청서를 접수한 후, 기존 승인 대회 및 신규 대회에 대해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단체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회 승인 이후에도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협회의 추가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 ③ 동호인 대회의 승인은 통합전산시스템(www.joinkfa.com) 상의 신청일 또는 공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합전산시스템(www.joinkfa.com)을 통하여 신청단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대회 승인의 위임)

- ① 시도협회 관할 범위 내에서 산하단체(시군구협회)와 지자체가 지역 내 팀들을 대상으로 지역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협회는 시도협회에 대회의 승인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받은 대회라 할지라도 시도협회는 본 규정에 준해 대회를 운영해야하며, 대회 일정 및 개최 계획은 개막 1개월 전까지, 결과는 폐막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임받은 대회에서는 대회명칭에 『전국대회』임을 뜻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대회 승인의 취소 또는 조정)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대회의 취소 또는 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승인을 위임한 대회에도 적용된다.
 - 1. 기존 대회의 운영에서 대회 승인을 취소 또는 조정해야 할 현저한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
 - 2. 축구 발전 차원 및 선수보호를 위해 대회 빈도나 방법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 3.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 4. 천재지변, 국가지정 전염병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참가팀 부족 및 주최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2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개최를 하지 못할 경우 협회는 해당 대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대회 주최 권한을 회수한다.

제12조 (승인 하지 않은 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위반 사항에 따른 제재)

- ① 협회 회원단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등록팀)는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는 각종 지원 사항에 대한 불이익 처분과 협회정관 및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할 수 있다.
- ② 비회원 단체가 협회 승인 없이 대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대회 참가팀은 공정위원회에 회부 될 수 있고, 해당단체는 협회가 승인하는 각종 대회 및 축구행사 등에 대한 「유치불가, 승인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대회 승인 요건

제13조 (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 ① 대회의 운영을 책임질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②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장, 부대회장, 본부장, 경기담당관, 심판담당관, 지원담당관, 안전담당관, 시설담당관, 의무담당관 등을 포함한다.
- ③ 대회 조직위원회 내에 긴급제재를 할 수 있는 (대회) 공정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경기장)

- ① 경기장은 FIFA경기규칙 「규칙1-경기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등부 8인제의 경우 '8인제 경기 규칙'에 따른다.
- ② 경기장은 협회가 인정한 천연 또는 인조잔디 경기장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 주최권자가 인조잔디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협회에서 인증 받은 경기장 또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등급의 인증을 받은 경기장에서 개최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협회는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승인할 수 있다.
 1. 경기장 부족 등으로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학교 등이 소유한 인조잔디 경기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청소년 대회를 개최할 경우
 3. 연장자, 동호인 대회 등 협회에서 특별히 적용을 면제하는 경우
- ③ 주최단체는 공식 경기장 및 연습구장 수를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 ④ 경기장의 숫자 부족 및 경기장 상태가 승인 요건에 미달할 경우, 대회 주최단체는 경기장 추가확보 및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여 특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시설 재점검을 통해 안전 및 대회운영 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회를 승인할 수 있다.
- ⑤ 대회에 사용되는 경기장은 천연잔디 구장은 첫 경기 개시일 (7)일전, 인조잔디 구장은 첫 경기 개시일 (3)일 전부터 원칙적으로 각종행사, 대회 개최와 무관한 일반대관 등의 사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경기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 (경기장 부대시설)

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기장 부대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팀 벤치
경기 중 팀 지도자와 대기 선수들이 앉을 팀별 벤치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선수 대기실
경기장마다 경기팀용 2개소의 선수대기실을 구비 하여야 한다. 동일 장소에서 2경기 이상 연속 경기를 하는 대회의 경우, 다음 경기 팀용 2개소를 포함, 총 4개의 선수 대기실을 구비해야 한다. 시설 부족 시는 간이 천막 등 임시 시설을 설치하고, 의자 등을 구비 한다.
- ③ 심판 대기실
경기장마다 최소 1개소의 심판 대기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시설 부족 시는 간이 천막(가림막 설치)

등 임시 시설을 설치하고, 의자 등을 구비 한다.

④ 샤워시설

경기장마다 2개소 이상의 샤워 시설 구비를 권장한다.

⑤ 관람석

1. 간이 관람석을 포함하여 경기장별 100석 이상 구비를 원칙으로 한다.
2. 관람객의 출입 통로는 선수 및 심판의 안전을 위해 선수 및 심판 출입구와 분리 되도록 한다.
3. 혹서기 대회 시에는 관람석 그늘막 설치를 권장 한다.

⑥ 진행본부석, 운영요원석 및 미디어석

1. 경기장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 진행 본부석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회 운영요원 및 기자, 방송 중계요원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좌석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⑦ 인터넷 시설 및 프린트 장비

1. 주최단체에서는 경기감독관 및 심판평가관 등의 보고서 작성 및 경기 정보 입력을 위해 경기장마다 2개 회선 이상의 유선인터넷 또는 무선인터넷(WIFI)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즉시 인쇄가 가능한 프린트 장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시설 및 프린트 장비 설치 제한 등 준비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별도 대안에 대해 반드시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음향 및 영상시설

1.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음향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2. 경기 결과를 표시하는 전광판 시설 구비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미비 시는 수동식 득점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⑨ 기타 편의시설

선수단 및 관중의 편의를 위해 1개소 이상의 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제16조 (숙박시설)

- ①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 응원단을 위한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대회 관계자와 참가팀이 동일한 숙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회운영본부(조직위원회,경기감독관,심판평가관,심판) 숙소를 별도로 지정한다.

제17조 (안전대책)

- ① 선수단, 심판, 운영요원의 안전 및 관중 질서 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실행해야한다.
- ② 선수단 및 심판의 동선은 응원단 및 일반관중과 분리해야한다.
- ③ 대회 진행 본부석은 관중의 방해받지 않고 업무 진행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경기감독관 및 심판평가관에게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참가팀 및 일반 관중의 출입을 통제한다).
- ④ 경기장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⑤ 응원단(서포터즈 포함)은 경기장내 지정된 구역(양쪽 골대 뒤 등)에 위치하도록 하여 응원단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 ⑥ 대회 개막전 및 경기 개시 전, 경기장 시설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⑦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 관련 기관 및 단체, 협회의 결정사항 또는 권고 사항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전염병 등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동계 및 하계 대회 개최 시 선수단 보호를 위한 별도의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경기 개시 시간)

- ① 일일 첫 경기는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표자 회의 시 참가팀의 동의 하에 경기 개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모든 혹서기 대회(저학년 대회 포함)는 야간 경기 개최를 의무로 하며, 경기는 17시 이후(18시 이후를 권장)로 개시하여야 한다. 단, 고지대 등 지역특성에 따라 평균온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경우, 대회위원회 결정에 따라 낮 시간에 경기를 할 수 있다.

제19조 (휴식)

- ① 선수의 피로 회복을 위해 경기 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단,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대회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식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조별 리그부터 본선 토너먼트 시작 전, 본선 토너먼트 시작부터 결승전 사이에는 각각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및 대회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휴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제20조 (대회 유치도시 선정)

대회 유치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각 대회 주최단체는 「대회 유치도시 선정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대회 유치비용)

- ① 「대회 유치비용(유치금)」이라 함은 대회 유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대회개최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지원금(비용)을 말한다.
- ② 주최/주관단체는 대회 유치비용의 수입, 지출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 ③ 주최단체와 유치단체(개최지)는 상호 수행해야 할 '제반업무, 권리범위, 의무사항, 유치비용(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대회 개최 협약서」 체결을 권장 한다.
- ④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심판, 협회파견 인원 등의 수당 지급은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예산 지침을 따른다.
- ⑤ 대회 유치비용의 집행항목은 각 주최 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주최 및 주관단체는 유치단체(개최지 지자체)의 회계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구비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동호인 대회의 승인 요건)

제4장 대회 승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호인 대회 개최의 경우 제17조(안전대책)를 제외한 제4장의 모든 조항을 적극 권장사항으로 하며, 각 개최지 및 대회 특성에 맞게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대회의 준비와 운영

제23조 (대회 조직위원회의 역할)

대회 조직위원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대회장: 대회의 대표자로서,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와 운영을 책임진다.
2. 부대회장: 대회장을 보좌해 대회 운영을 돕는다.
3. 대회공정소위원회: 대회 중 긴급 제재 조치를 위한 대회공정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4. 본부장: 대회와 관련한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하며, 아래와 같이 분야별 담당관을 둔다. 필요시 각 경기장별 책임자를 둘 수 있다.
 - 가. 경기담당관: 경기 진행 업무수행
 - 나. 심판담당관: 심판 활동 보조 업무수행
 - 다. 지원담당관: 시설, 물자의 조달 업무수행
 - 라. 안전담당관: 안전사고에 대비한 업무수행
 - 마. 시설담당관: 각종 시설의 관리 업무수행
 - 바. 의무담당관: 선수의 부상 등 의료 사고 관리 업무수행
 - 사. 홍보담당관: 대회 홍보를 위한 업무수행

제24조 (대회의 구분)

대회는 참가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U12: 초등학교팀, U12클럽팀
2. U15: 중학교팀, U15클럽팀
3. U18: 고등학교팀, U18클럽팀
4. 대학부: 대학교팀, 대학생클럽팀
5. 일반 클럽부 (일반부)
 - 가. 프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K1, K2리그 클럽팀
 - 나. K3, K4: K3, K4리그 참가팀
 - 다. K5, K6, K7: K5, K6, K7리그 참가팀
 - 라. WK: 한국여자축구연맹 소속 클럽팀
 - 마. 동호인 일반 : ‘가~라’호를 제외한 각 연령별(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등)로 구성된 팀
 - 1) 선수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원칙으로 각 출생연도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출생자는 동일 연령으로 간주한다.
6. 축구발전을 위해 남자대회(리그)에도 특별 승인을 받은 여자팀이 참가할 수 있다.

제25조 (대회의 준비)

대회주최 및 주관단체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협회의 대회승인 후 대회규정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협회의 추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대표자회의 개최
 - 가. 참가대상: 주최, 주관자 및 참가팀의 대표자 또는 지도자 1인
 - 나. 시기: 대회규정에 명시된 일정
 - 다. 내용: 대회규정 설명, 대진 추첨, 기타 공지사항 안내
 - 라.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3. 심판, 의무 및 안전요원, 운영요원, 경기장, 부대시설, 물자, 안전대책 등의 확보

4. 대회 현수막, 팸플릿, 상장, 트로피 등의 제작

제26조 (대회방식)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대회 방식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채택된 방식은 협회와 사전 협의 후 대회규정에 명시한다.

1. 토너먼트 방식
2. 예선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 방식
3. 풀리그방식
4. 위 사항에 없는 기타 방식의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

제27조 (대회운영)

주최자는 대회의 대표성을 가지며, 아래 각 호와 같이 대회운영을 관장한다.

1. 주최자는 대회 첫 경기 하루 전 경기감독관, 심판평가관 및 대회 관계자 회의를 통해 대회운영 계획에 대해 협의한다.
2. 주최자는 「리스펙트 캠페인(RESPLECT CAMPAIGN)」에 적극 동참하여 상호 존중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회운영을 하여야 한다.
3. 대회 개막 전 및 대회 기간 중 심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시설을 제공한다.

제28조 (상업적 권리)

- ①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방송중계권판매, 광고판매, 후원사 선정, 입장료 징수 등 모든 상업적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주최, 주관, 후원자는 상업적 권리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③ 유·청소년 연령의 팀이 참가하는 대회의 경우,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대회 명칭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경기장 내에서 해당 상품의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 ④ 모든 대회의 경우, 사회풍속에 반하는 상품 또는 그 제조회사를 대회 명칭으로 채택해서는 안 되며, 경기장 내에서 해당 상품의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

제29조 (경비의 부담)

- ① 주최자는 대회 개최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 ② 주최자는 주관, 후원자와 함께 경비의 분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 (참가비의 징수 및 보조)

주최자는 필요할 경우,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참가팀으로부터 대회 참가비를 징수하거나 참가팀을 위해 대회 참가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 (보험가입)

주최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참가팀의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 가입 여부를 대회 참가요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32조 (참가팀을 위한 지원)

주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 제공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1. 참가팀을 위한 연습장(공간) 제공
2. 참가팀의 숙식, 이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3. 대회 조직위원회 및 주요 연락처 제공
4. 참가팀에 대회 사용구 지원

제33조 (심판운영)

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된다.

1. 모든 대회의 심판 배정 및 파견 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회원단체 또는 기타단체(또는 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
2. 전국대회를 제외한 대회는 협회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시도협회에서 심판을 배정, 파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단, 파견 심판의 심판비와 출장비는 협회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
3. 동호인 축구팀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대회는 전국대회를 포함하여 해당 시도협회에서 심판을 배정, 파견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파견 심판의 심판비와 출장비는 협회 기준을 참고하여 개최 대회 특성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시설 점검)

- ① 주최자는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 ② 주최자는 협회 담당자(또는 주최자) 및 경기감독관의 경기장 시설, 안전상태 점검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안 발생 시에는 협의를 통해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회 사용구)

대회 사용구는 반드시 당해 연도 협회의 승인을 받은 공인구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제36조 (대회홍보 및 경기기록 관리)

- ① 주최자는 대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다.
- ② 주최자는 경기 일정과 결과를 신속하게 언론사 및 각종 매체에 홍보한다.
- ③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경기기록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전국대회의 경우 마지막 경기 종료 후 4시간 이내에 협회 통합전산시스템(www.joinkfa.com)에 결과가 입력되었는지와 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경기기록지 원본을 협회 등록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개회식 및 폐회식)

필요시 개회식과 폐회식 개최에 대한 사항을 대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사전 경기)

본 경기에 앞서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경기(오픈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본 경기개시 90분전에 종료되어야 하며, 우천 등의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의료 지원)

- ①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차량 및 국가공인자격증이 있는 응급처치 가능자를 반드시 경기장에 배치하여 한다.
 1. 구급차량의 경우, 응급구조 물품 및 산소 호흡기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자동제세동기(AED)를 갖추고 있는 차량 배치를 권장한다.
 2. 구급차량은 각 경기장별 1대 이상 배치하고, 예비용 일반 차량을 추가 배치한다(초등부 8인제의 경우에는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비용 일반 차량의 경우 긴급차량 표시를 별도로 한다.
 3. 응급처치 가능자는 경기장별 1인 이상 배치한다.
 4. 경기장에 배치된 구급차량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경기장을 떠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구급차량을 신속히 배치하기 위해 위 '2호' 구급차량 외에 예비용 구급차량(1대) 및 응급처치 가능자(1명)를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② 의료 지원자는 경기장에 설치된 의료 지원석에 앉고, 구급차는 경기장 인근에 배치한다.
- ③ 들것조 활동을 위해 별도의 전담인원(4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 ④ 경기 중(킥오프부터 경기 종료까지) 부상을 당한 선수의 치료비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주최자가 부담하며, 대회규정에 명시한다.

제40조 (시상)

주최자는 대회 종료 직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상을 실시한다.

1. 단체상: 우승, 준우승, 3위, 페어플레이상, 응원상 등
(단, 초등부의 경우, 성적에 따른 팀 순위 시상은 하지 않는다.)
2. 개인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상, 득점상, 수비상, 베스트영플레이어상, 골키퍼상, 지도자상, 심판상 등
3. 위 '1~2호'에도 불구하고 각급 대회 시상은 협회에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동호인 대회의 경우 시상 부문을 해당 대회규정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제41조 (대회 보고서 및 평가서)

주최 또는 주관자는 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6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2014. 8. 28)

1.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2020. 12. 7)

1.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며, 세칙의 세부 조항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3. 본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2022. 9. 23)

1.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제14조 ②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협회의 인조잔디 인증제도 시행일(2022. 9. 23) 이전 건립된 경기장은 건립연도에 따라 인조잔디 성능이 유지되는 경기장에 한해 해당 경기장의 준공일 기준 최대 5년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3. 협회의 인조잔디 인증제도는 협회에서 별도 제정한 “인조잔디 경기장 품질기준”, “인조잔디 인증 품질절차서”를 따른다.

<부 록>

[별지1] 대회승인신청서(양식)



대회 승인 신청서

‘국내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및 협회의 제반 규정과 관련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대회 운영 계획서에 따라 대회를 개최 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구분	내용	비고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장소		
참가팀	참가 대상	
	참가팀수	
주최		
주관		
후원		

2. 대회 담당자

구분	주요 담당업무	소속	직책/성명	연락처		
				무선	유선	이메일
1						
2						
3						

신청일 :

신청자 : (단체명)

(직인)

대한축구협회 귀중



0000 축구 대회 운영계획서

1. 대회명
2. 대회목적
3. 대회기간
4. 대회장소
5. 운영단체
 - 1) 주최 :
 - 2) 주관 :
 - 3) 후원 :
6. 참가팀
 - 1) 참가 대상 :
 - 2) 참가 팀 수 :
 - 3) 참가 예상 인원 :
 - 4) 참가팀 지원 :
 - 5) 입상팀 특전 :
7. 대회방식 : 예) 조별 리그 후 16강 토너먼트
8. 시설 계획
 - 1) 경기장 운영 계획(※ 추가 사진 자료 제출)

구분	경기장명	주소	이동거리 (중심지⇒경기장)	잔디상태/관리상태		규격	관중석		조명	
				천연/인조	상/중/하		유/무	좌석수	유/무	lux
1										

2) 연습구장 운영 계획

구분	연습구장명	주소	이동거리 (중심지⇒경기장)	잔디상태/관리상태		규격	비고
				천연/인조	상/중/하		
1							

3) 부대시설 운영(준비) 계획

- 본부석
- 선수대기실
- 심판실
- 화장실
- 관중석
- 미디어석
- 음향
- 기타 편의시설 등

4) 숙박시설 운영 계획

- 대회운영본부 숙소 배정 : 대회운영본부(조직위원회) 인원, 경기감독관
- 심판 숙소 배정 : 심판평가관, 심판
- 팀 숙소

9. 예산(안)

수입		지출	
항목	금액	항목(예시)	금액
		<input type="checkbox"/> 감독관,평가관비 <input type="checkbox"/> 심판비 <input type="checkbox"/> 출장비 <input type="checkbox"/> 시상비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비 <input type="checkbox"/> 물품구입비 <input type="checkbox"/> 자료제작비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용역비 <input type="checkbox"/> 홍보비 <input type="checkbox"/> 리셉션비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input type="checkbox"/> 각종수당 <input type="checkbox"/> 축구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input type="checkbox"/> 대회명칭사용비 <input type="checkbox"/> 기타운영비	
합계		합계	

10. 안전 대책

1) 의료지원 계획

- 구급차 배치
- 의료인력 배치
- 지정병원 선정
- 기타 의료 관련 이슈에 대한 대응 계획

2) 혹서기/혹한기 대책

3) 일반 안전 대책

4) 경기장 안전(위험) 시설 점검 대책

5) 주차 계획

6) 안전인력 운영 계획

12. 홍보 계획

1) 현수막 게첨

2) 언론홍보

3) TV중계

4) 기타

13. 대회 규정

[별지 3] 대회 조직위원회 조직도(양식)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0000 축구 대회 조직위원회 조직도
---	----------------------

구분		내용
대회장		
부대회장		
대회임원	임원장	
	임 원	
대회운영본부 (주최단체)	본부상황실장	
	공정 위원회	
	운영 조정관	
	경기 담당관	
	심판 담당관	
	사업 담당관	
	홍보 담당관	
	심판 담당관	
	운영 담당관	
개최지 시도협회	임원	
대회운영 (주관단체)	운영위원장(운영총괄)	
	경기 담당관	
	심판 담당관	
	지원 담당관	
	시설 담당관	
	안전 담당관	
	의무 담당관	
	홍보 담당관	
	의전 담당관	

※ 상황에 맞게 1인이 2~3개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담당관을 증설할 수 있다.

[별지 4] 대회 최종 결과 보고서(양식)

 KFA Korea Football Association	<h2 style="margin: 0;">대회 최종 결과 보고서</h2>
---	--

구분	내용	
1. 대회명		
2. 기간		
3. 장소		
4. 주최		
5. 주관		
6. 후원		
7. 참가팀 수		
8. 대회방식		
9. 예산결산내역		
10. 시상내역	1) 단체상	
	2) 개인상	
11. 대회평가	1) 경기력	
	2) 대회운영	
	3) 심판운영	
	4) 시설운영	
	5) 의료지원	
	6) 안전/질서	
	7) 대회홍보	
	8) 개선사항	
	9) 기타 특이사항	
12. 총평		

작성일 : _____

단체명 : _____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귀중

[별지 5] 경기장 시설/물자/인력 점검표 (표준)



경기장 시설/물자/인력 표준 점검표

구분	점검대상	확인	보완사항
경기장 시설 및 물품	경기장 라인 설치		
	골대 1세트(및 예비용 보조골대 1개) / 골망		
	선수 대기실 2실(2경기 이상 진행 시 : 4실)		
	심판 대기실 1실(2경기 이상 진행 시 : 2실)		
	경기감독관/심판평가관 대기실(대회본부와 공동 사용 가능)		
	대회본부 사무실 : 인터넷,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용지		
	팀벤치 및 대기심판석		
	감독관/평가관석, 경기진행석, 의료반석(의료인력, 들것조), 기자석, VIP석		
	음향시설(스피커, 마이크 등)		
	전광판 시설		
양식지	텐트, 파라솔, 책상, 의자 등		
	경기감독관 보고서(전산 입력 시스템 도입)		
	심판평가관 보고서(전산 입력 시스템 도입)		
	심판 보고서(전산 입력 시스템 도입)		
	경기 기록지(전산 입력 시스템 도입)		
	대회 참가신청서 출전 선수 교체표		
인력 배치	경기장별 담당 인력 배치도(대회진행, 시설, 안전 담당관 등)		
	행사보조 인력 : 볼스텝/들것/기수단/주차관리/점수판 관리/안전요원 등 기타(자원봉사 등)		
의료	구급차 제외(각종 응급구조장비 비치)		
	의료인력(국가공인자격증 소지자)		
	응급치료용 용품		
	지정병원 선정		
경기 용품	경기 사용구 / 에어펌프		
	코너깃대 / 코너기 : 4개 1세트 및 예비용		
	들것 : 1~2개		
	선수 교체판 : 1~2개		
	점수판(팀명, 점수표)		
	팀명(벤치부착용-권장사항)		
	각종 조끼(볼보이, 기수단, 들것조 등)		
	초시계		
	골망 보수용 자재(줄, 케이블타이 등)		
	기타(ICE박스, 쓰레기봉투, 생수 등)		
각종 깃발	게양기 : 태극기, 대회기, 협회기 등		
	입장기 : 대회기, 페어플레이기, 리스펙트기, 팀기 등		
제작물	대회 책자, 포스터 등		
	각종 안내표지판 (선수대기실, 경기장, 화장실, 대진표, 자원봉사 등)		
	각종 홍보 현수막 (경기장 내외, A보드, 거리현수막 등)		
시상품	트로피, 상장, 상장 케이스, 메달 등		
기타	FIFA입장곡, 교가, 기타 음원		